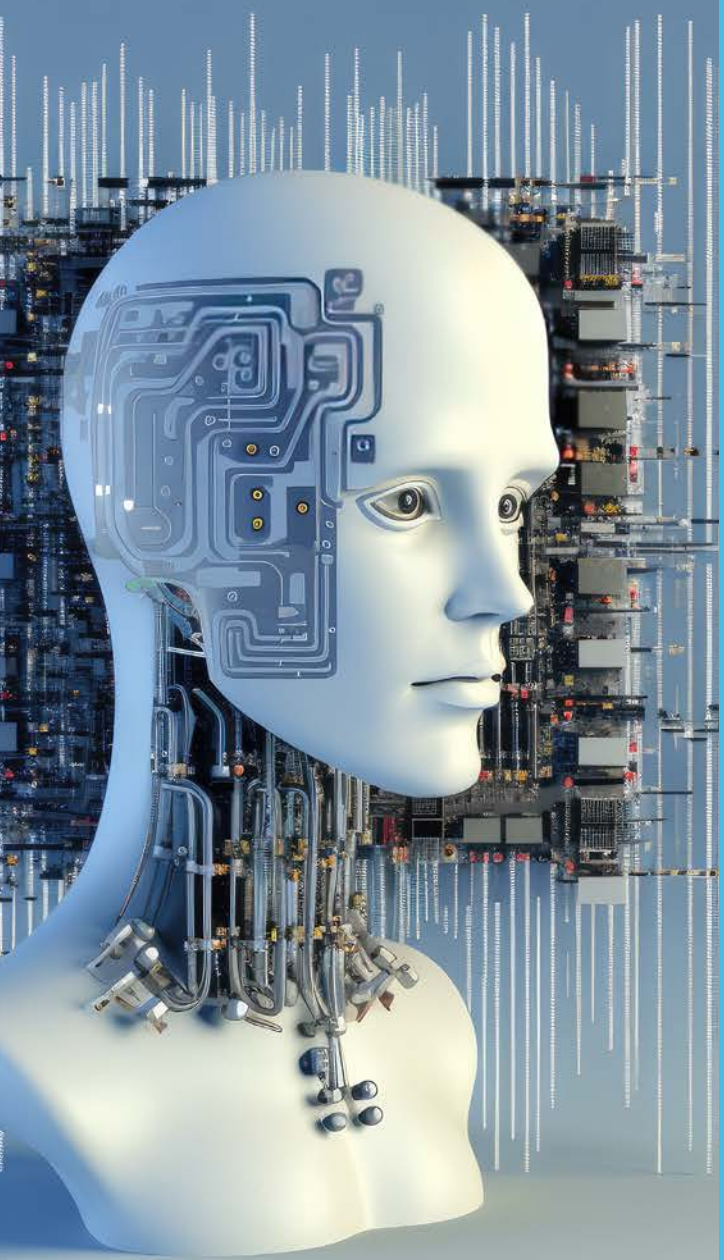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55
2025.11.17.



젠슨황이 주목한 '피지컬 AI'시대, 주요 구성품의 HS Code는?

김성채 한국HS연구원 원장(PWC 관세법인)
AI 하드웨어의 품목분류 쟁점 (2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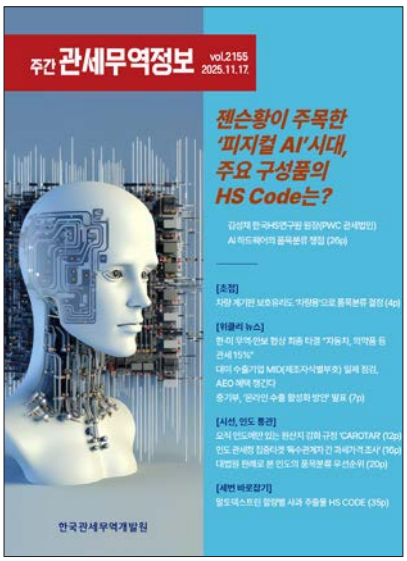
[초점]
차량 계기판 보호유리도 '차량용'으로 품목분류 결정 (4p)

[위클리 뉴스]
한·미 무역·안보 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 의약품 등 관세 15%"
대미 수출기업 MID(제조자식별부호) 일제 점검, AEO 혜택 챙긴다
중기부,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7p)

[시선, 인도 통관]
오직 인도에만 있는 원산지 강화 규정 'CAROTAR' (12p)
인도 관세청 집중타겟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조사' (16p)
대법원 판례로 본 인도의 품목분류 우선순위 (20p)

[세번 바로잡기]
말토덱스트린 함량별 사과 추출물 HS CODE (35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11월 17일(통권 제2155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차량 계기판 보호유리도 '차량용'으로 품목분류 결정 "자동차 기술발전 반영"

07 **Weekly News**

오피니언

12 **시선, 인도통관**

최영훈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원산지증명 강화한 인도의 'CAROTAR' 규정과 대응방안

윤승현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인도 관세당국의 집중조사 대상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조사'

장재원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인도 대법원 판례로 분석하는 품목분류(HS Code) 결정의 법리

관세행정실무해설

24 **질의응답사례**

성인용 기저귀 수입요건

품목분류동향

26 **품목분류해설**

A.I. 하드웨어의 품목분류 쟁점

35 **세번 바로잡기**

사과 추출물

최신개정법령

38 **입법예고**

이번 호부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계기판 보호유리도 '차량용'으로 품목분류 결정 "자동차 기술 발전 반영"

관세청,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관세청이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용 유리와 고급 차량 옵션인 마사지 모듈 등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두 품목은 각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양허세율 0%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고급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 열린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량 디지털 대시보드 보호용 유리다. 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7007.1호 '강화안전유리', 제7007.11호에는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제7007.19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물품은 한·중 FTA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된다.

● 쟁점물품(위) & 쟁점물품이 장착된 사례(아래) ●



출처 : 관세청

그간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봤지만, 이번 결정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반영해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또 다른 쟁점물품은 고급 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 모듈이었다. 해당 물품은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WTO양허 0%)'로 결정했다.

● 쟁점물품 ●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 제8479호와 제9019호 용어 ●

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9019호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관세청은 자동차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해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품목분류 기준 제시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고춧가루에 오렌지껍질 등을 혼합해 소매포장한 혼합조미료인 '시치미'의 경우 기존에 제0904.22-0000호로 분류됐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혼합조미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103.90-9030호로 결정했다.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제0904.2호에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제0904.22호에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반면,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한다. 제2103.90호에는 '기타', 제2103.90-9030호에 '혼합조미료'가 세분류된다.

그밖에 플라스틱필름과 부직포로 구성된 멸균상태 유지 포장재의 경우 제3923.21-0000호가 아닌, 제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3923.21-000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_ 포장대_'의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이 분류되나 제6307.90-9000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의 '기타'가 분류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부직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제6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차량 계기판(등) 커버 글라스	제7007.11-1000호(한·중 FTA 0%)
2	시치미	제2103.90-9030호(조정 45%)
3	멸균상태 유지 포장재(easy-tear bag 등)	제6307.90-9000호(기본 10%)
4	멸균상태 유지 포장재(STERILIZATION ROLL)	제6307.90-9000호(기본 10%)
5	차량 마사지 모듈(massage module assy)	제9019.10-2000호(WTO양허 0%)
6	차량 마사지 모듈(vibration module assy)	제9019.10-2000호(WTO양허 0%)

출처 :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수출입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무역·안보 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목재 이어 의약품도 관세 15% 안 넘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 합동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경주 APEC 당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실 및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한·미 FTA 또는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것, 또는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부문별 관세(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해당 품목의 한·미 FTA 또는 MFN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한·미 FTA 또는 MFN 관세와 추가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의 경우에도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은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아울러 제네릭(복제) 의약품·원료·화학 전구체,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는 기존에 한국정부가 설명한대로 양국이 MOU를 체결한 전략투자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미 달러 자금조달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도록 요구받지 않으며, MOU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보이면, 한국은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성실하게 이를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상호적 무역 촉진을 위해 한국은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적합 차량의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연간 5만대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미국 기관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농식품 비관세장벽 해소로 바이오테크 승인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데스크 설치, U.S. 육류·치즈 특정 용어 시장 접근 유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도 명시됐다. 백악관은 "미국은 양국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평화적 목적)에 이르는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해당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AEO 공인기업 미 MID 전수 조사 ··· AEO 혜택 누락 방지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Manufacturer 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 비율 축소 및 신속 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뿐만 아니라 AEO MRA를 체결한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을 포함한 20개 국가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 AEO 기업이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돼야 한다.

MID는 미국에서 수입물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제조자의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미국은 AEO 식별정보로 MID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관세청이 AEO 공인을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여 없이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발행하는 구조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MID는 최대 15자리로 국가코드(2자리), 첫 번째 상호의 3개 문자(3자리), 두 번째 상호의 3개 문자(3자리), 번지수의 4개 숫자(4자리), 소재 도시명의 3개 문자(3자리)다. 가령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각각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MID를 발급할 경우 다른 MID가 발급될 수 있다. 이때 미국 CBP는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해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CBP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 제조자식별부호(MID) 구성체계 및 유의사항 ●

[구성체계] 최대 15자리 : CC NAM NAM 1234 CIT

국가코드	첫 번째 상호의 3개 문자	두 번째 상호의 3개 문자	번지수의 4개 숫자	소재 도시명의 3개 문자
2자리	3자리	3자리	4자리	3자리

[유의사항]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수입업체별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MID)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

예시) 서울 관세구 수출로2가 481번지(수출로 786)에 있는 길동전자(주) 공장의 경우,
지번 : Gildong Electronics Ltd, 481, 2-Ka,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도로명 : Gildong Electronics Ltd, 786,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 (1) '2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KRGILELE4812SEO, KRGILELE481SEO 등 가능
(2) 도로명 주소를 제공받은 수입자는 KRGILELE786SEO 발급 가능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른데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관세청은 국가별 차이를 반영해 기재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상담전문관(AM)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AEO MRA의 신속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중기부,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 중소 플랫폼 육성·물류·통관 부담 완화에 총력

미국의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물류·통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육성과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 간소화 등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11월 14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K-브랜드 전문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육성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현지법인 설립 및 플랫폼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또한 B2B 중심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온라인 수출 전 과정(지원제도 확인·신청·관리·애로해결)을 통합 제공하는 '중앙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물류기업과 연계해 물류 신청·관리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을 신규 지정한다.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 우수 제품과 각종 경진대회 수상 제품, 주요 행사 인기 상품 등이 우선 발굴 대상이다. 또 기업이 ▲시장 조사, ▲진출 준비, ▲플랫폼 입점, ▲지식재산권 인증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됐다.

온라인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물류 및 통관 문제도 살핀다. 2026년 신설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이 마련된다. 또한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우편(EMS)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지원해 신속배송과 물류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건립 중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소량·다품종' 물량 특성에 대응한 전용 물류센터로, 2026년 말 본격 운영 시 하루 2만 4,000개 이상의 물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주요 항만·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공간 구축을 추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미국 LA 등 해외 물류센터에 중소기업 전용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설해 보관·배송·반품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 주도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위조·모방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협의체' 본격 가동 ··· 반덤핑 철저 대응

반덤핑 대응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제공할 '반덤핑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월 12일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이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의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 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 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적극적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안전·유해·지재권 집중검사"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 단속

관세청이 글로벌 할인 행사를 앞두고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11월 11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 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집중검사한다.

단속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 인력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한다. 국표원의 전문 인력과 합동으로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 등 겨울용품의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 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로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이 실시된다.

● 2024년 겨울용품(전기온수기·크리스마스조명·스노보드) 불법·위해 적발 사례 ●



출처 : 관세청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 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다. 중국발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로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도 강화한다.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될 예정이며,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의 경우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한다. | 하구현 기자 |

●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사례 ●



화장품, 휴대폰, 의류, 포토카드 등이 적발됐다(출처 : 관세청)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 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 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관에게 인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통관 문제를 들어봤다.

원산지증명 강화한 인도의 'CAROTAR' 규정과 대응방안



최 영 훈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인도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CAROTAR 2020'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해 특혜관세 혜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줬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CAROTAR와 관련해 통관애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수입신고마다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도 처음 제출한 자료가 계속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는 통관 이후 심사 과정에서 이용되고 관세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도 수입자와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CAROTAR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

1. CAROTAR 2020 개요

CAROTAR는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의 약자로, 번역하면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칙 관리 규정'이다.

인도는 기존 CEPA·FTA 활용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의 진위 및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단순한 C/O 제출만으로는 원산지 부정 수혜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진위 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자 이 규정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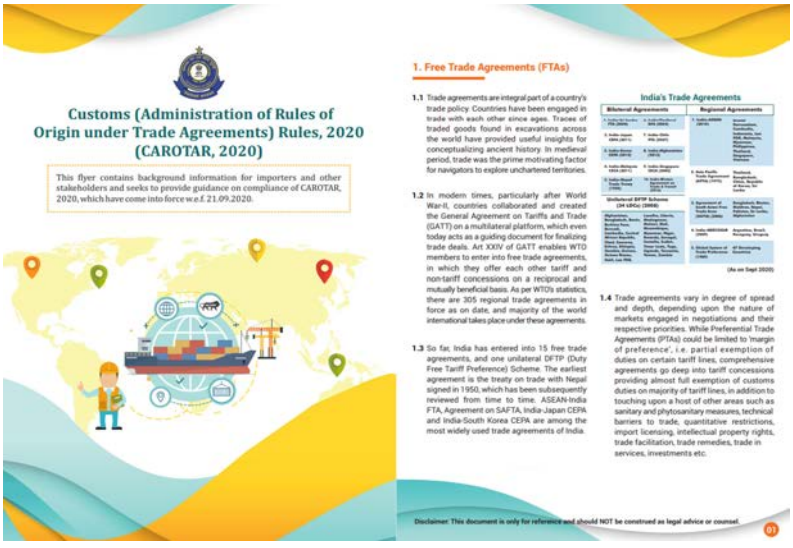
개정 형식을 보면 해당 내용이 관세법(Customs Act, 1962) 제28DA조에 신설됐다. 이 규정은 크게 '1-1. Section 28DA: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tial rate of duty(특혜 관세율 청구 절차)'와 '1-2. Rule 4: Origin related information to be possessed by importer(수입업자가 보유해야 할 원산지 관련 정보)' 두 가지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절차와 내용은 2020년 8월 21일 별도 지침[Notification No. 81/2020-Customs(N.T.)]을 통해 시행됐다.

통관애로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산지 입증 정보 'Form-I'를 "Form-1[폼 일(아라비아 숫자 1)]"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아라비아 숫자 1과 영문 I(아이)가 비슷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우리말로 하면 '폼-아이(Form-I)'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다.

2. 한국 수출자가 알아야 할 사항

CAROTAR 2020의 핵심은 인도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 시 C/O 외에 상품의 원산지 충족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Form-I를 작성해 인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Form-I의 제출 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지만, 이 Form-I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핵심 정보는 전적으로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한국 수출자는 수입자가 Form-I에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의 ①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②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상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3. 세관의 자료 요구, 영업기밀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CAROTAR, 2020)

This flyer contains background information for importers and other stakeholders and seeks to provide guidance on compliance of CAROTAR, 2020, which have come into force w.e.f. 21.09.2020.

1.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dia's Trade Agreements

인도 관세청이 발간한 CAROTAR 2020 해설서(출처 : https://shillongcustoms.gov.in/wp-content/uploads/2020/10/CarotarBrochure_7thOct2020.pdf)

CAROTAR 시행 이후, 인도 세관이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자를 통해 한국 수출자에게 부가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의 세부 내역이나 생산공정에 관한 상세 자료 등 민감한 영업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우리는 인도 관세청에서 발간한 CAROTAR 2020 해설서(Q&A)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부가가치 비율(RVC) 세부 자료 요구

RVC 35%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인도 세관은 개별 품목의 상세한 원가 분할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Q&A 5번에 따르면, 규정이 반드시 원가 분할이나 독점적인 생산 과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자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자를 대신해, **국내 부가가치 계산에 사용된 주요 구성요소(예 : 자재, 노동력, 이익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체 자료 제출보다는 대표 품목에 한정해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공해 세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

2) 생산 공정 및 원재료 함량 자료 요구

특정가공공정, 잉크 배합 비율 등 민감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Q&A 4번은 "수출업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도 수입자의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관은 수출국 인증 당국에 공식적인 해외 검증(Verification)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입자에게 금융 부담(Bank Guarantee)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정보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핵심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성실하게 제공하되, 과도한 영업기밀은 합리적인 선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그리고 수출자 사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세관이나 수입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할 의무사항은 없다고 본다.

4. 한국 수출자를 위한 효과적인 CAROTAR 대응방안

CAROTAR 규정 하에서 원활한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 수출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Form-I 제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와의 협의가 필수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자를 통해 Form-I 사본을 받아서 ① 물품 품명 및 HS Code, ② 적용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수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잘못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로 인한

추징 사례 방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 시 HS품목을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우를 봤다. 10년 전 처음 수출 시 신고했던 HS Code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인도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사례도 있고,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이미 변경된 HS Code인데도 인도 세관에서 별도 고시를 하지 않아 종전의 HS Code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품목분류는 특혜관세 적용의 큰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류기준이나 변경 내역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수출물품이라도 원재료 구매나 생산공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변경 사항이 Form-I에도 반영되도록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동일한 Form-I를 계속 제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orm-I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서,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판정 서류는 최소 5년간 완벽하게 보관하고, 인도 세관의 검증 요청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영문 자료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맺음말

통관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인도 세관은 기본관세와 협정관세 차액을 은행지급 보증(Bank Guarantee)으로 요구한다. 담보의 일종이지만 은행에서는 보증금액만큼 잔액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금이 동결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건별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묶어서 지급보증하게 되고, 묶인 모든 수입신고 건의 검증이 완료돼야만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인도 수입자가 수출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된 FORM-I도 있을 수 있다. 인도 수입자와 장기적으로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규모가 큰 경우라면 수입자와 FORM-I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CAROTAR 제도는 유일하게 인도만 운영하는 강화된 특혜관세 절차다. 한국 수출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인도 사람들은 "No problem"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과 내가 말하는 '지금 이순간'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모든 면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인도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내 최대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세 이슈를 짚어봤다.

인도 관세당국의 집중조사 대상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조사'



윤 승 현 | 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1. 인도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조사 절차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당수는 주요 부품 또는 핵심 원재료를 한국본사로부터 조달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수입거래는 관세당국의 집중검토 대상이다.

인도에서는 본·지사 간 최초 수입거래 발생 시 인도 관세청(CBIC) 산하 과세가격특별조사부서(SVB, Special Valuation Branch)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특수관계자 또는 그 밖의 수입거래에 대한 SVB 조사(이하 'SVR 조사')절차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도 고유 제도이기에 인도에 처음 진출한 기업들은 SVB 조사 절차로 인해 난항을 겪기도 한다. 또한, SVB 조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SVB는 HS 품목분류와 함께 인도에서 가장 빈번한 관세조사 대상이다.

필자가 앞서 작성한 '시선, 인도 통관[본지 통권 제2150호(10.6.)]'에서는 인도의 관세조사 방식과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에 대해 다뤄보겠다.

2. 인도 관세평가

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정된다. 이때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고 한다. 인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WTO 회원국으로서, WTO 관세평가 협정을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 및 관세평가규칙(Customs Valuation Rules, 2007)에 반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거래가격은 단순히 인보이스(Invoice) 금액이 아니라, 관세평가규칙에 따라 가산돼야 할 비용과 서비스 대가를 반영해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인도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국본사로 송환하기 위해 수수료, 기술지원비,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급액들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법령상 과세대상 가산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인도 관세 이전가격

본·지사 간 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고 한다. 인도법인이 제3자로부터 수입한다면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국본사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본사와의 협의에 따라 임의로 수입가격을 높이거나 낮게 설정할 여지가 있다.

수입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인도법인의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인도 국세당국이 높은 이전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하면 과세가격이 낮아져 관세 및 내국세가 감소한다. 이 경우 인도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저가신고 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전가격▲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법인세▼** (**국세 이슈** 발생)
이전가격▼ →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 및 내국세▼** (**관세 이슈** 발생)

4. 인도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조사(SVB)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관세평가를 진행할 때는 간접지급액이나 법정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와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세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도 관세청에서는 본부세관(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뱅갈루루)에 SVB 조사부서를 설치해 특수관계의 존재, 가격에 대한 영향,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계약 내용이 과세가격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한다.

● SVB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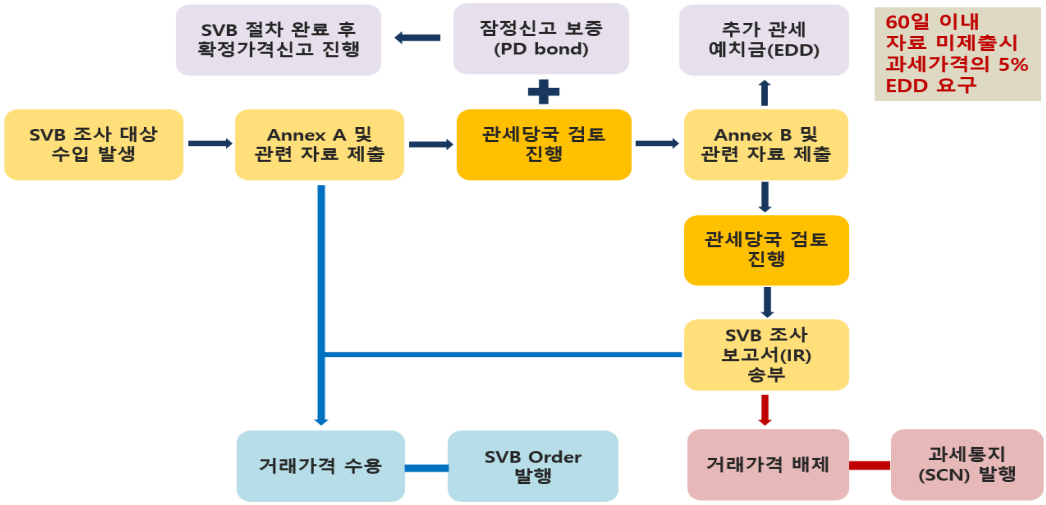
(1)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과 같은 법정가산요소가 관련돼 있는 경우 :
-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 금액이 있는 경우
- 사후귀속이익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 인도 관세청 공고 Circular 5/2016 dated 2016.2.9.

5. 인도 SVB 조사 절차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거나, 간접지급액 또는 법정 가산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SVB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SVB 조사부서는 수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SVB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심층조사까지 가는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조사 진행 중에도 수입통관은 가능하다. 수입자는 잠정신고 보증을 제공하고 잠정가격신고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SVB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확정가격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출처 : 저자 작성

6. 시사점

SVB는 관세 목적의 이전가격을 정하는 과정이다. 한번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이 확정되면 이후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는 그 기준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사에 지급하는 비용들을 과세대상으로 보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SVB 조사의 조기 종결은 가능하나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비과세 논리와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 SVB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SVB 갱신신고가 필요한 경우 ●

(1)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품 판매에 관한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계약 조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 또는 새로운 판매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입물품과 관련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기타 지급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5)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입 후 가격조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 인도 관세청 공고 Circular 5/2016 dated 2016.2.9.

또한, SVB 결과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나, 거래 환경 변화나 한국본사와의 신규 계약 체결 등 실질이 바뀐 경우에는 갱신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사후 관세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 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 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인도에서의 관세 및 품목분류 분쟁과 관련해 인사이트를 제안했다.

국제 통상 분쟁의 핵심

인도 대법원 판례로 분석하는 품목분류(HS Code) 결정의 법리



장 재 원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국제무역에서 '품목분류(HS Code)'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율 결정, 수입 규제, 무역정책 집행에 직결되는 법적·경제적 기준이다. 같은 물품이라도 그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수 배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조세 부담은 물론 심각한 형사적 제재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75) 해석을 통해, 이러한 품목분류 판단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엄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사법적 쟁점임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인도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품목분류 분쟁에서 적용되는 일반해석원칙(GRI)을 살펴보고 해석 기준의 방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관세 품목분류의 법적 토대와 일반해석원칙(GRI) 적용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국제무역 준수, 세수 징수, 규제 집행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다.

인도 관세율표는 21개 부(Sections)와 98개 류(Chapters)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의 HSN(Harmonized System Number) 모델을 직접 따르고 있다. 분류 시에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일반해석규칙(GRI)이 적용된다.

1) GRI 1 : 호(Heading) 및 주(Note)의 법적 우선성

품목분류는 일차적으로 호(Heading)의 명시적인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따라 우선 결정돼야 한다. 부와 류의 제목은 단지 참고용일 뿐 법적 의미가 없으며, 후속 원칙(GRI 2~6)은 GRI 1에 따라 분류가 명확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Nagpur v. Simplex Mills Co. Ltd.(2005) 판례에서 인도 대법원은 미가공 직물(Non made-up goods)이 산업용 직물 특정 호[Tariff Headings(TH) 59.09]가 아닌, 그 재질에 따른 호[예 : 면(52.02) 또는 기타 직물(54.08)]하에 분류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TH 59.09가 류 주(Chapter Note 6)에 따라 가공된 물품(made-up articles)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단순히 산업용으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는 주(Note)의 우선성을 확립한 것이다.

또한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v. Madhan Argo Industries (I) Pvt. Ltd. And Ors.(2018) 판례에서, 인도 대법원은 포장 크기(2리터 이하)와 관계없이, 제품이 첨가물이 없고 식용으로 라벨링 된 100% 순수 코코넛 오일로 남아있다면, 헤어오일(HS 3305)이 아닌 식용유(HS 1513)로 분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관세율표 조항과 류, 주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때는 일반 용어 테스트(Common Parlance Test)보다 우선하며, 단순 재포장은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있다.**

2) GRI 2 : 불완전 물품 및 혼합물의 범위 확대 해석

GRI 2는 호의 설명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GRI 1으로 해석이 어려울 경우에만 적용된다.

GRI 2(a)는 완전한 물품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경우에도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다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상태(CKD/SKD 팩)의 물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M/s. Quippo Energy Ltd. v.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 Ahmedabad(2025) 판례에서 인도 대법원은 수입된 가스 발전기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필수 구성 요소와 결합하는 과정이 제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수입 발전기가 최종 '파워 팩'으로 변형되는 과정이 변형 테스트(Transformation Test)를 충족하고 상업적 시장성을 가진 시장성 테스트(Marketability Test)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GRI 2(a) 적용에는 엄격한 조건이 있다. Commissioner of Customs v. Sony India Ltd.(2008) 판례는 Rule 2(a)가 적용되려면 모든 구성품이 동시에 제시돼야 하며 완성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집합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장기간 분할 수입된 부품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했다.

Commissioner of Customs v. Maestro Motors Ltd.(2005) 판례 또한, CKD 팩이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관세 목적상 완성된 자동차로 취급돼야 하며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GRI 2(b)는 혼합물이나 조합물에 대한 법리를 다룬다. Collector of Central Excise v. Wood Polymers Ltd.(1998) 판례에서 복합 물품인 장식용 라미네이트는 강성, 강도 및 내열성을 부여하는 수지(Resin)에서 본질적 특성이 파생되므로 플라스틱류(제39류)에 분류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Collector of Customs, Bombay v. S.H. Kelker & Co. Ltd.(1998) 판례에서는 향수 원료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향기나는 화학 물질 혼합물은 특정 용도를 위한 것이므로 유기화학품류(제29류)가 아닌 혼합물류(33.02)에 분류된다고 판결했다.

3) GRI 3 : 구조화된 동률 결정 원칙(Tiebreaker Rules)

GRI 3는 물품이 GRI 2(b)의 적용 또는 기타 이유로 둘 이상의 호에 일차적으로 분류될 수 있을 때만 적용된다.

GRI 3(a)의 특수성 테스트(The Specificity Test)는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호가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호보다 우선한다. 여기서 법원은 단순히 명칭을 넘어 상업적 정체성 및 소비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본다.

M/s Ponds India Ltd. v.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2008) 판례는 바셀린 화이트 페트롤리움 젤리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 '피부 관리를 위한 화장품 및 위생 용품'으로 분류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규제 당국에 의한 분류(예 : 의약품 면허)가 세금 목적의 분류에 결정적이지 않으며,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이 중요함을 확립한 것이다.

O K Play (India) v. Commissioner of Central Excise(2005) 판례에서는 기능적 특성(functional characteristics)에 기초한 일반 용어 테스트를 적용해,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가구류는 가구(94.01/94.03)로,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오락용 품목은 장난감(95.03)으로 분류해야 함을 강조했다.

GRI 3(b)의 본질적 특성 테스트(The Essential Character Test)는 복합 물품 및 혼합물이 3(a)로 분류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사용, 기능적 유용성, 부피 또는 가치에서 해당 구성 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G.S. Auto International Ltd. v. Collector of Central Excise(2018) 판례는 상업적 정체성 테스트(Commercial Identity Test)를 적용했다. **볼트, 너트 등이 특별히 자동차용으로 설계 및 판매됐고 OEM 부품 번호와 함께 판매됐다면 일반 용도의 패스너(73.18)가 아닌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87.08)로 분류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판매 목적과 상업적 맥락이 품목분류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GRI 3(c)의 기타원칙(The Residual Rule)은 GRI 3(a)와 3(b)를 적용한 후에도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최종적인 원칙이다. 물품은 동등하게 고려되는 호 중에서 수치상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호 하에 분류돼야 한다.

2. 시사점

인도 대법원의 관세법 해석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GRI)을 계층적인 순서(GRI 1, 2, 3)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확립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판례들은 관세율 결정이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엄밀성과 소비자와 상업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사법적 쟁점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는 단순한 기술적 사양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용어의 명확성, 물품의 본질적 특성, 시장에서의 기능적 역할 및 상업적 정체성에 대한 법률적 관점의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도 대법원의 판례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요건 / 성인용 기저귀 수입요건

제9619.00-1090호에 분류되는 성인용 기저귀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9619.00-109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 성인용 기저귀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 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 등)]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탐폰 ◦ 생리대 ◦ 팬티라이너

[수입승인서] 「위생용품 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기저귀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

원산지 / 원산지 표시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日本製'라고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적정한 방법에 해당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24.3.8.)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022.10.31.)을 수용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추가[○○제(일본제)]했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따라서 문의하신 표시 방식인 ‘일본제(日本製)’는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분류 / 미완성 안전모의 HS Code

안전모 틀이 되는 제품으로, 안구 및 기타 보호용품이 추가로 부착돼야 하는 미완성 물품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지만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제품(안전모자의 경우라면 제6506.10-0000호 분류 검토)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FTA / 한·영 FTA 서류 및 절차

영국 의류 브랜드에서 대량으로 옷을 직구할 예정입니다. 한·영 FTA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주세요.

한·영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이 한·영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와 물품이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됐음을 입증하는 서류(B/L 등)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상업서류(통상 Invoice)에 한·영 FTA 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 및 작성일자, 수출자 서명 등을 기재해 발행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이 6,000유로(2025년 영국정부에서 환산한 금액 GBP 5,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A.I. 하드웨어의 품목분류 쟁점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전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자사의 최신 **AI칩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31일 "지금이 한국에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며, "한국은 소프트웨어, 제조업, AI 역량이 있어 막대한 영향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세션에서 "세계적으로 3가지 기본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나"라며 이처럼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로보틱스의 활용 기회**가 많아지고 이게 **피지컬AI의 차세대 모델**"이라며, "전체 공장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수퍼컴퓨터가 구축되고 있다. 기술 기업과 손잡고 로보틱한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장 전체가 로봇으로 구동되고 로봇이 인간과 함께 구동하는 것, 로봇이 로봇을 조작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게 바로 AI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출처 : 중앙일보(2025.10.31.)

1. AI, AI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글쓴이는 지난 6월, 품목분류해설 지면[통권 제2133호(2025.6.9.)]에서 AI에 대해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거나 이를 초월하여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라는 정의를 인용해 논한 바 있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AI는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이고 소프트웨어는 시간,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무체물이므로 품목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AI가 상품으로서의 상업적 거래를 위해 솔리드 스테이트 저장장치나 그 밖의 기록용 매체에 저장돼 제시된다면 이는 제8523호에 분류될 수 있겠으나, 현재 시장에서 AI의 일반적인 거래방식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나 온라인 구독모델을 활용해 이뤄지므로 기록용 매체에 저장돼 거래되는 AI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형태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렇듯이 AI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그 능력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AI의 작동을 위해서 일상적인 컴퓨팅 작업과 초기 데이터 처리, 그리고 AI 모델이 특정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를 포함한 각종 프로세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주기억장치나 처리할 데이터 또는 처리한 데이터의 읽기, 쓰기 및 보관을 위한 저장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보편적인 처리장치를 HS 품목분류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라고 표현하며 AI 소프트웨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로딩돼 제시된다면 그 자체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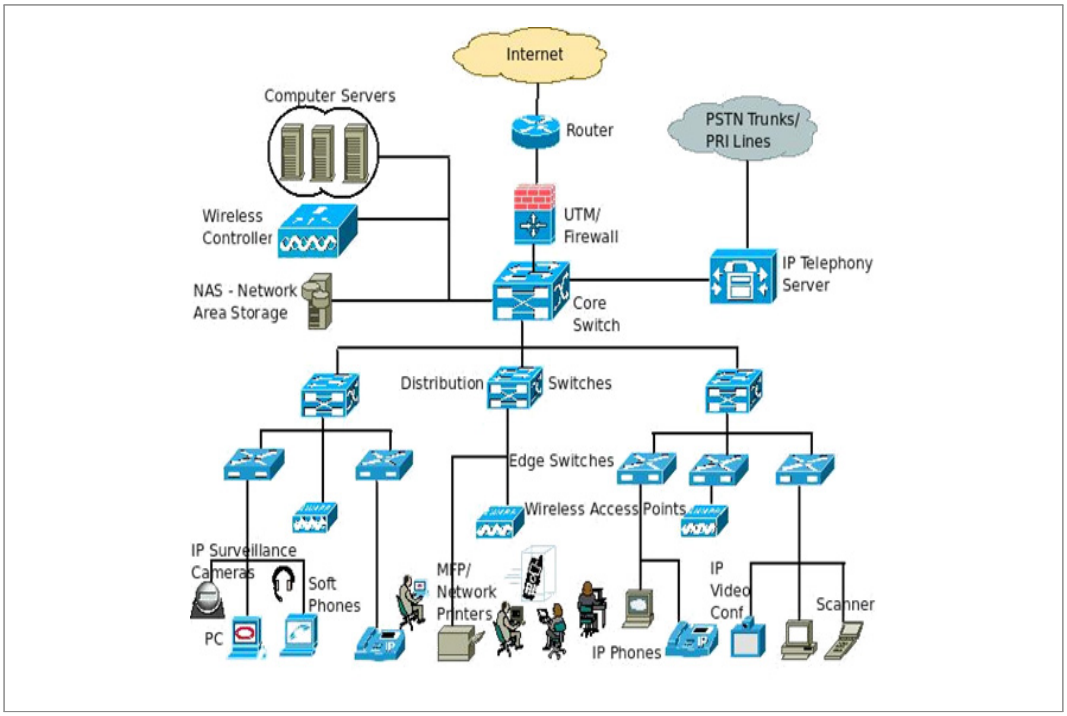
실제 AI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면 AI는 개인의 컴퓨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거나 작동하기보다는 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서버 기반의 모델 형태로 호스팅된다. 즉,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기에서 AI에 어떤 질문을 입력하면 해당 질문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전달되고 서버에서는 AI 모델이 이 질문을 처리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나 응답을 생성한 다음 이를 다시 사용자의 기기로 전송한다. 즉, AI 서버가 앞에서 말한 "AI 소프트웨어가 로딩된 자동자료처리기계"인 셈이다.

AI 서버는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네트워크상에 존재한다. 로컬 네트워크나 광역 네트워크에서 웹 브라우저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서버를 이어주며, 서버와 사용자 단말기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최적화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관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및 보안을 위한 방화벽 등이 중간에 개입하게 된다.

네트워크상에서 서버와 사용자 단말기를 이어주기까지의 과정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장비(라우터, 스위치, 리피터, 변환기, 방화벽, AP 등)는 제8517호에 분류된다.

AI 서버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한다. 현재 AI는 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 추론, 문제해결, 이해 및 자연어 처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를 활용해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AI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보관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말한다.

● 서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성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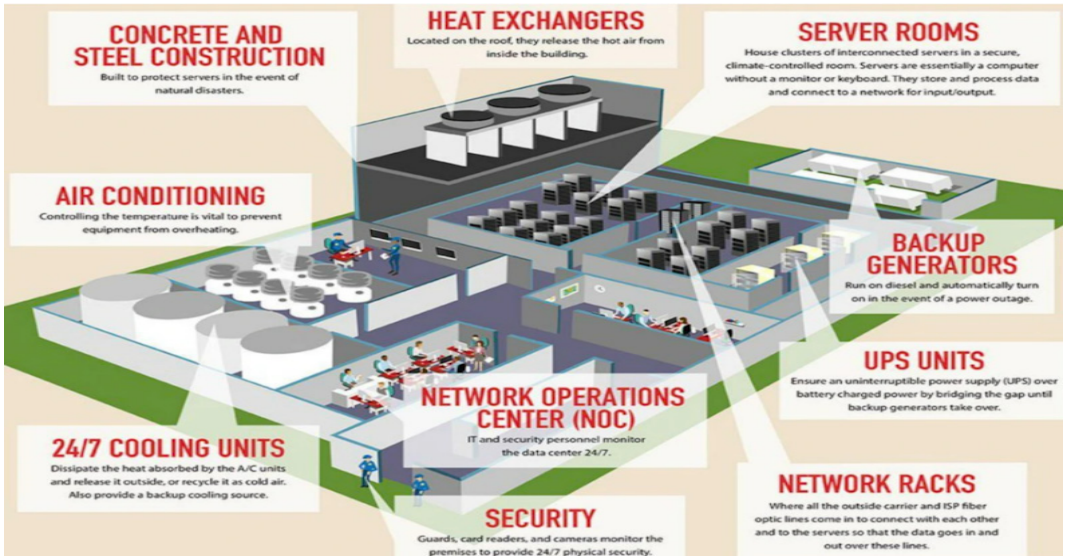


● 데이터 센터의 예시 ●



데이터 센터는 여러 대의 컴퓨터 서버, 네트워트 장비, Storage system 등을 집약적으로 설치해 기업이나 정부의 IT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중요 인프라이기도 하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작업은 매우 높은 연산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효율적인 냉각 및 환경제어, 재해복구와 백업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물리적인 기반장비를 포함하게 된다.

● 데이터 센터 구성 예시 ●



출처 : DeKalb Data Center 페이스북

앞서 말한 것처럼 AI 서버는 제8471호에 분류되며, 서버 장착용 rack만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제9403호에 분류된다. 방화벽,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는 제8517호에 분류되며, 비상전원을 위한 발전세트는 제8502호에, 정전 등 비상시 예비전력을 위한 UPS(무정전 전원장치)는 제8504호에 분류될 수 있다. 그밖에 냉각 등을 위한 장치나 장비는 그 성격에 따라 제8415호, 제8419호 및 제8479호 등 적절한 호에 분류가능할 것이다.

2. CPU, GPU 등 각종 프로세서 및 메모리

CPU와 GPU는 컴퓨터의 연산을 처리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프로세서(반도체)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컴퓨팅 작업, 즉 프로그램의 실행, 시스템 관리, 데이터 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실행이나 복잡한 로직 연산 등에 관여한다. HS 품목분류표 제8471호 해설서는 CPU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제8471호 해설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시스템(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2호 참조). 상호 접속은 유선이나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과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 ···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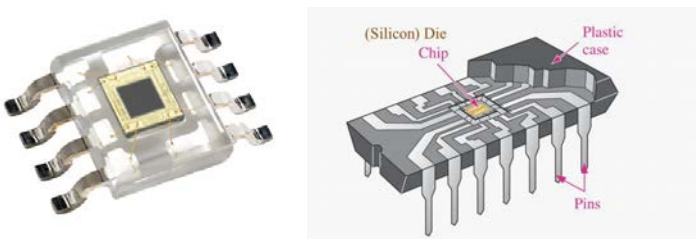
CPU가 소수의 코어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프로세스의 직렬작업에 적합한 반면, GPU(Graphic Processing Unit)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처리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GPU는 다수의 간단한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기에 적합하며 비디오게임용 그래픽의 렌더링이나 영상 및 이미지 처리에 효율적이다. 특히 동시에 많은 수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AI 딥러닝 모델에 GPU의 활용도가 높아 GPU는 대표적인 AI 프로세서로 이해된다. 그 밖에도 TPU(Tensor Processing Unit), NPU(Neural Processing Unit) 등이 AI 프로세서용으로 설계된 하드웨어로 꼽히고 있다.

또한 AI 연산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프로세서와 함께 DRAM, SRAM, SSD, HBM 등 여러 종류의 메모리가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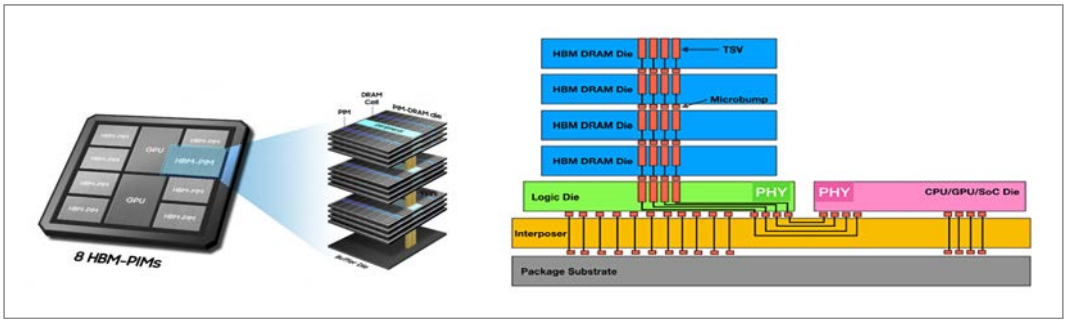
시장에서 CPU나 GPU를 언급할 때는 여러 단계의 물품을 통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HS 품목분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물품까지 한꺼번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 물품이 제8542호의 집적회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HS 품목분류표 제8542호에는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IC), 하이브리드 IC, 복합구조칩 IC, 복합부품 IC 등 네 가지 종류의 물품이 포함된다. 프로세서나 메모리는 통상 그 자체로는 반도체 제조(Fabrication) 업체에서 제조한 모노리식 집적회로 형태부터 시작한다.

● 모노리식 집적회로(제8542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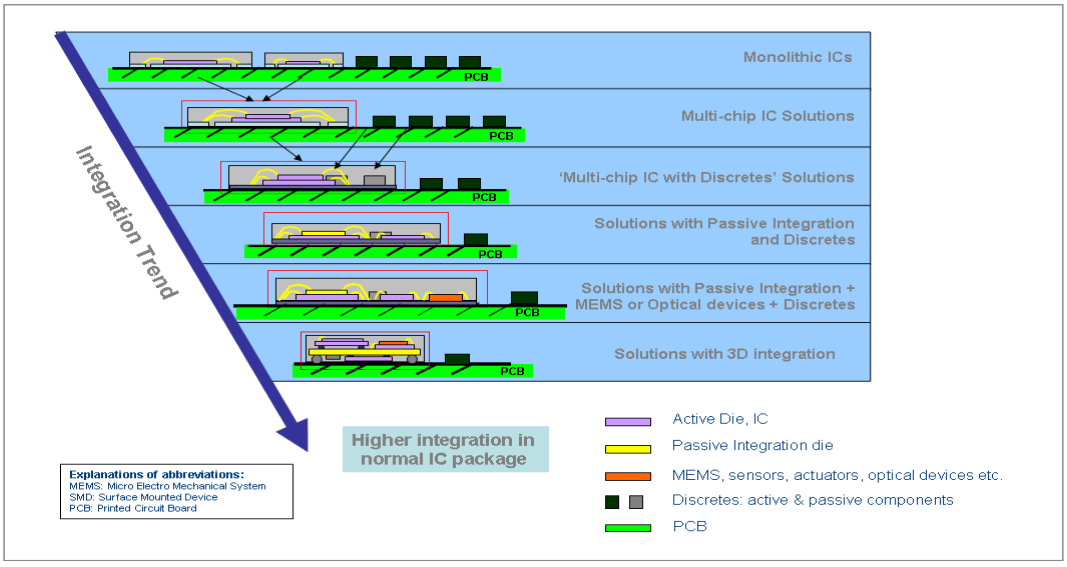
● HBM 모듈 :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제8542호) ●



그러나 시장에서 AI 프로세서, 또는 AI 가속기로 불리는 물품들은 대체로 제8542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둘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프로세서, 메모리 등)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등 개별부품을 추가한 것으로서 복합부품 IC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은 제8542호에서 벗어난다.

● 반도체 패키지 집적화의 발전과정 ●



위 그림을 예로 설명하자면 둘 이상의 집적회로와 개별 능수동 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축전지, MEMS 소자 등)가 분리불가능한 단일체로 결합된 경우(보통 하나의 패키지 내에 집적된 것을 말한다) 이 물품은 복합부품 IC로서 제8542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보통 패키지 겉면에 볼, 리드, 범프, 핀 등의 접속자를 형성하고 있어 PCB나 다른 기판 위에 조립되기 적합한 부품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다른 추가적인 개별부품과 함께 별도의 PCB나

다른 기판 위에 장착하게 되면 이 상태의 물품은 보통 제8542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PCB 위에 CPU 패키지가 장착돼 있고 추가로 패키지 외부에 다수의 커패시터가 장착된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벗어나 제8473호에 분류가능하다. 또한 PCB 위에 그래픽 프로세서, 메모리, 전원 공급회로, 쿨링 시스템 및 출력 포트(HDMI, DP 포트 등)가 장착돼 있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메인보드에 결합할 수 있도록 PCI 인터페이스를 갖춘 그래픽 카드는 제8471.80호에 분류할 수 있다.

● PCIe 타입의 GPU 카드와 NPU 카드(제8471.80호) ●



시장에서 GPU 카드, NPU 카드, AI 카드 또는 AI 가속기라 불리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제8471.80호에 분류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Physical AI와 HS 개정 문제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 젠슨 황은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로보틱스의 활용 기회가 많아지고 이게 피지컬 AI의 차세대 모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지컬 AI(Physical AI)란 AI가 채택 혹은 내장된 로봇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봇, 혹은 AI가 내장된 로봇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HS 품목분류표에서 로봇이라는 용어는 모두 두 번(소호 제8428.70호와 제8479.90호) 등장한다. 4단위 호의 용어 또는 부나 류의 주(Note) 수준에서 로봇에 관한 정의나 언급은 없다. 다만 로봇의 일반적인 품목분류 원칙에 대해 HS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8479호 해설서**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 <중략> ···

산업용 로봇은 용접, 페인팅, 취급, 적하와 양하, 절단, 조립, 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며 ··· <중략> ···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나 제8515호).

요약하자면 로봇은 그 명칭과 무관하게 기능에 따라 제16부의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하고 다용도의 로봇은 제8479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6부 이외에 제17부나 제90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23년 9월, 제72차 WCO(세계관세기구) HS 위원회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실내용 서빙로봇과 실외용 배달로봇 2종에 대해 제8428.90호로 분류결정하면서 로봇과 관련한 향후의 HS 개정안 발굴을 회원국들에게 독려한 바 있다.

● 서빙로봇(좌)과 배달로봇(우) : 제8428.90호 분류(제72차 HS 위원회) ●



그러나 로봇과 관련된 HS 개정, 예를 들어 HS 품목분류표에 특정한 호를 신설해 로봇을 모두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향후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새로운 호를 신설하거나 로봇이라는 용어를 4단위 호의 용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로봇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뒤따라야 하지만, 품목분류 관점에서 로봇을 다른 기계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떨어지는 기준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법 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 <중략> ···
>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8373)는 로봇(Robot)에 대해 "이동, 조작, 위치 지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었고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장치(a programmed actuated mechanism with a degree of autonomy to perform locomodation, manipulation or positioning)"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의로는 로봇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자동화기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품목분류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새로운 호를 신설할 경우 주(Note) 등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로봇은 가정, 산업, 의료, 수송 심지어 완구나 반려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므로 HS 품목분류표의 어느 특정 부나 류에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제72차 HS 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로봇에 관한 HS 품목분류표 개정과 관련한 어떠한 제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젠슨 황의 피지컬 AI 언급은 향후 로봇기술이 더욱 발전된 수준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지컬 AI의 본격화로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과 관련된 HS 개정 논의가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사과 추출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서양에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을 상징하는 대표 과일로 여겨지고있다.

사과나무의 원산지는 발칸반도로 알려져 있는데, B.C. 20세기경의 스위스 토굴 주거지에서 탄화된 사과가 발굴된 것으로 봐 서양 사과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4,0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서양종 사과와 재배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말콤 펜윅이라는 캐나다인 농학자이자 선교사다. 조선시대 말기인 1893년에 원산시에 들어와 기독교 선교를 하던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수원을 가꿨는데, 이때 들여온 것이 바로 서양종 사과였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사과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말산, 펙틴 등의 성분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되며, 특히 사과 추출물은 항산화·보습·향미 증진 등 다양한 기능성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과 추출물에 대한 품목분류 상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사과 추출물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해 분무건조한 갈색 분말 상으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는 제1302.19-9099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될 수 있다.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과실을 압착·추출한 것은 제2009호에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에 분류될 수 있어, 본 물품은 제1302호가 아닌 제2009호의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 물품은 중량 기준으로 말토덱스트린의 함량이 50% 이상인 혼합물이라는 점**이다.

제2009호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견과류 주스나 채소 주스는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설탕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 양이 정상적인 감미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주스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아래 항목(4)를 참조].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예 : 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 구연산·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 비타민·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구성 성분의 균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첨가물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 「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녹색 사과 퓨레(puree)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 말토덱스트린이 증량제(carrier agent)로서 최종 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57%를 구성하는 양으로 첨가되었다. 이 물품은 가루 형태이고, 물에 완전히 녹으며, 식품(예 : 채소 수프나 소스)에 첨가되도록 되어 있다.	**제2106.90호 분류**
시금치 주스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 탄산칼륨[산도(酸度) 조절제]과 말토덱스트린(증량제)이 첨가되어 있다. 말토덱스트린의 양은 최종 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70%를 구성한다. 이것은 가루 형태로 제시되었고, 물에 완전히 녹으며, 식품(예 : 채소 수프나 소스)에 첨가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과실이나 채소 주스에 증량제로 말토덱스트린이 혼합된 물품의 품목분류 시 증량제가 적어도 50% 이상일 경우에는 과실주스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분석 의뢰된 본 물품은 말토덱스트린이 중량 기준으로 50% 이상인 물품으로 제2009호에서 제외해 제2106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 〈중략〉 ···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 〈중략〉 ··· 천연주스 속에 존재하는 과실주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 하는 정도로 특정성분(구연산·해당 과실 등에서 추출한 정유 등)을 첨가하여 변성된 과실주스로 향미(香味)를 내게 한 시럽 및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산)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과실의 정유(essential oil)·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이 있으며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사과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02.19-9099 (FCN1 3.6%)	Food preparations	2106.90-9099 (FCN1 0%)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55호_2025.11.17.

최신개정법령

이번 호부터 최신개정법령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연구 > 지식정보 > '최신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